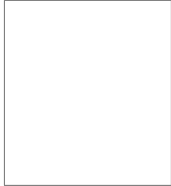



(앞쪽)

제 호	
출입검사원증	
소 속: 직 급: 성 명: 기 간:	
위 사람은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	
평택시장	

55mm×80mm [백상지 150g/㎡]

(뒤쪽)

주 의 사 항
1. 이 출입검사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.
2. 개발사업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는 이 검사원증을 내 보여야 합니다.
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